

## 미국사례 2

### 당연적 명예훼손 이외의 명예훼손 성립여부는 배심원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Belli v. Orlando Daily Newspapers, Inc. 389 F. Orlando Daily Newspapers, Inc. 20 579  
(미연방고등법원 제 5 순회법정 판결, 1907)

#### 사실개요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원고벨리)가, 다른 보수는 지급할 수 없으나 호텔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의 초청을 받아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다. 그런데 9년후에 피고 신문사는 원고가 위 호텔 계산서에 수백달러어치의 옷값을 포함시켰었다는 허위의 가십 기사를 냈다.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암심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승소할 만한 청구원인을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상을 각하하였다. 항소심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1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 판결요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 자체적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당연적 명예훼손(libel per se)의 경우 이외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이유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벨린 벨리씨에 관한 허위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변호사인 벨리토는 재판전략으로서 확정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옴으로써,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많이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또한 잭 루비나 기타 유명인사들의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플로리다주 올란도시의 변호사인 레온 핸들리씨는 1964년 3월 올란도 이브닝스타지의 칼럼니스트인 잔 요더즈양과 가진 대화에서 벨리토에 관하여 그가 들은 바 있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플로리다개 변호사협회는 벨 리 씨가 마이애미비치에서 개최된 1955년도 총회 중 토론회의 일원으로 참석해주도록 초청한 바 있다. 벨리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는데, 플로리다변협은 참가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예산이 없으면서 대신 변협이 벨리 부부의 호텔비용을 책임지기로 양해되었다.」 핸들리토의 말에 의하면, 벨리 부부가 플로리 다를 떠난 후, 변협은 벨리부부가 호텔비용으로 계산을 돌린 한 무더기의 옷값청구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 이야기 중 험담적인 부분은 명백히 허위였다. 벨리 부부는 어떤 구입비도 호텔계산으로 돌린 바 없었다. 불행하게도, 잔 요더즈는 1964. 3. 19자 올란도 이브닝스타지의 자신의 가십란에 위 9년전의 이야기를 운색하여 덧붙여 보도했다.

1 심은 벨리의 소상이 승소할만한 청구원인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1 심은 어떤 진술이 당연적 명예훼손이 되느냐 여부는 오직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는 그릇된 가정에 근거하였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발표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히 명예훼손적이어서 법률상 호심재판을 받아서는 아닐까 사건이나 여부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적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하는 발표 자체에도 명예훼손적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다. 플로리다주와 많은 주들에 있어서 당연적 명예훼손(libel per se)은 어떤 사람을 불신, 증오, 모욕, 희롱, 오명에 떨어뜨리는 모든 발표를 말한다. 예컨대 브리그스 대 브라운사건에서 법원은 당연적 명예훼손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은 타인을 불신, 증오, 모욕, 희롱, 또는 오명에 떨어뜨리거나 또는 그 사람의 직장, 직업, 사업 또는 고용관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문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면책되지 않는 발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발표내용이 허위이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타인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또는 사업상의 관계나 생활의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발표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서 당연히 소추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법과 플로리다주법이 프로써(Prosser)학장의 다음과 같은 결론과 같다고 인정한다 : 어떤 말이 특정한 의미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렇게 해석되어 야만 하는지 여부는 1 차적으로 법원에 판단할 일이다 ; 그 다음에 그 말이 사실상 명예훼손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는 배심원들이 결정할 일이다.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 하고자 한 의미가 명예훼손적인 것이 없는지 여부는 배심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어떤 말이 명예훼손이 되느냐를 결정함에 있어 판사와 배심원 양자가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워싱턴포스트 대 찰로너사건에서 이러한 역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바 있다 :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발표내용은 원래의 독자들이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에서 읽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읽었을 때 그 의미가 너무나도 명백하여 한가지의 해석밖에 가능하지 않다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법관이 판단할 일이다. 반면에 한 가지 해석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어서 제소가 가능하고, 다른 해석으로는 그렇지 않는 등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 외부적 사실 등도 포함한 그 발표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참작할 때 그것이 대상으로 한 사람 또는 이를 실제로 읽은 사람들에 의하여 위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배심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이 사건 1 심법원은 완전히 배심원들의 역할을 배제했는데, 이는 위 발표가 명백히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가정 아래서만 취할 수 있는 입장이다.

1 심법원이 아무런 이유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고들이 답변서에서 원심법원의 논리를 밝히려 노력하고 있다.

피고들은 그 기사가 변호사로서의 벨리토를 해하지도 않았고, 그의 확정적 증거 제시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의미한 것도 아니며, 그가 자부하고 있는, 선원이나 철도노동자들이 더욱 적절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그의 능력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 기사는 사실, 플로리다 변협의 날카로움에 대한 신랄한 논평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벨리는 단순히 플로리다 변호사들에게 위 약정이 그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벨러에게 유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했다. 피고들은, 그 기사를 대충 보더라도, 결국 그 기사는 벨리 씨가 플로리다변협의 공금을 사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과하고, 이는 궁핍한 과부를 집으로부터 꼬셔내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벨리토는 변협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계약으로부터 얻어냈다는 것이다. 피고들은 그 기사가 명예훼손적이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기사는 문면상 명예훼손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실제로 그와 같이 이해되었는가 여부는 배심원들이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그의 준비서면에서, 그 기사를 읽는 독자는 신호사이자 일반 시민인 멜빈 벨리가 탐욕적이고, 기만적이며, 비열하고 부정직한 협잡꾼, 아바위꾼, 술수꾼, 거짓말장이, 사기꾼으로서, 믿을 수 없고 회피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 이외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 기사에 관한 피고들과 같은 점잖은 해석이나, 원고와 같은 과장된 반박을 참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기사의 요지는 벨리가 수백달러어치의 웃으로 플로리다변협을 속였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글쓴이의 논평은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들을 일반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독자는 "취했다(take)"는 말을 요더즈양이 이해했음에 틀림없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최신판 사전은 그 말을 "협잡하다, 속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른 사전들도 이 정의에 부합한다. 일반인들은 호텔비용에는 수백달러어치의 웃값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들에 관하여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벨리가 처음부터

플로리다변협을 속일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다. 우리는 벨리가 했다고 말하여진 행동이 변호사로서의 논리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적 명예훼손의 네 가지 범주 중의 하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배심원들이 결정할 수도 있다곤 본다. 배심원들은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벨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침해를 당할 수 있는 비난과 조롱에 처하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법원은 문제의 기사가 명예훼손적 의미가 없다는 데에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에는 거의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은 이 명예훼손의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배심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 이야기는 9년전의 일이다. 그것은 중요한 공공사에 관한 토론의 과정에서 얘기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법리가 수정헌법 제 1 조와 언론자유에 미치는 제한적 훈과 때문에 법관이 배심원들의 역할까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내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명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그 말을 수용하였던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것을 읽은 특정 독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기조차 하므로, 배심원들이 논리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그 말이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 원고에 대한 평가가 가하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찌기 17 세기에 법원은 타운센드사 대 휴즈박사 사건에서, 「말들은 엄격한 또는 유순한 의미에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자연적이며 모든 사람의 상식적 리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플로리다는 위 「상식」의 기준을 채택하여 왔다. 일정한 발표내용의 명예훼손적 효과에 관한 의문은 매심원들의 상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아무리 가장 세심하고 사려깊다 하더라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심의 각하결정을 파기하고, 이 법원석 의견에 따른 심리를 더 하도록 이 사건을 환송한다.

### **간볼드 판사의 동조의견**

나는 이 사건의 발표내용이 구두이건 서면이건 간에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명예훼손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따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이 법률상 당연히 명예훼손적이라고 판단한다…… 배심원들의 역할이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 법관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발표내용이 단순한 트집을 넘어 명예훼손적이라면,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명성을 침해받을 바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명성에 대하여 재차의 공격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관은 헌법상의 자유나 기타 부분에 관하여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판단에 관하여 늘상 다루고 있으며,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법관의 역할이나 명성이 침해된 경우라 하여서 축소되어서는 아니 된다.